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5호)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m ²)	비 고
합 계			71.41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29.02	공공주택지 구 및 그 인근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18.09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4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굴현·동양·박촌·병방 ·상야·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m ² 초과
	상업지역	150m ² 초과
	공업지역	150m ² 초과
	녹지지역	100m ²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m ²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m ² 초과
	임 야	1,000m ²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m ²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5. 허가구역 지정 현황도면: 생략(기존 허가구역과 동일)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